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 제안설명서

2025.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세 무 과)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세무과장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세 제도의 연구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 지방세제의 선진화와 재정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연구로 입법지원을 하고 있으며,
- 세무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 협력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가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6억1454만1000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536만1000원입니다.

※ 출연금 산출 내역: 153,614,541천원(결산액) × 1/10,000=15,361천원

**□ 이 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와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00925092
----------	----------

제출연월일: 2025. 9. 3.  
제출자: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 1.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361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을 출연
  -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 1만분의 1),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3. 출연 심의 요구서: 붙임

## 4. 참고자료

- 가. 출연기관 현황
- 나.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예산
- 다. 연구사업 추진 현황 및 2026년 추진 방향
- 라. 관계법령

## 출연 심의 요구서

<b>출연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li> <li>○ 일반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주요사업)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ul>																				
<b>출연사업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출연 예정금액: 15,361천원</u></li> <li>○ 예산편성 요구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5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6년 요구액</th> <th colspan="4">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구비</th> </tr> </thead> <tbody> <tr> <td>우리구 출연금</td> <td>1년</td> <td>17,986</td> <td>15,361</td> <td>15,361</td> <td></td> <td></td> <td>15,36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우리구 출연액 비중은 전국 124억원 중 0.14% 차지</li> <li>○ 산출근거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53,614,541천원) × 1/10,000(출연율) = 15,361천원 ☞ 출연율: ‘20년(1만분의 1.5) → ‘21년(1만분의 1.3) → ‘22년 이후(1만분의 1.2) → ‘26년부터(1만분의 1)</li> </ul>	구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구비	우리구 출연금	1년	17,986	15,361	15,361			15,361
구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구비																
우리구 출연금	1년	17,986	15,361	15,361			15,361														
<b>출연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li> <li>○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li> </ul>																				
<b>부서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li> <li>○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li> <li>○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 참고(1)

## 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02-2071-2748 홈페이지: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25년 8월 기준)	구 분	계	원 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78명	1명	50명	2명	4명	21명
	현 원	64명	1명	34명	2명	4명	23명
	총인원	98명	정원외 인원 34명 (파견공무원12, 위촉연구원13, 위촉전문원3, 행정원4, 청사관리원2)				
임 원 (2025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중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2027.2.1.	
	부이사장	김 하 수	경상북도 청도군수			2025.3.13.~2026.3.12.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체국장			당 연 직	
	이 사	오 준 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8.30.~2025.8.29.	
	이 사	이 태 산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2024.8.30.~2025.8.29.	
	이 사	조 병 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24.8.30.~2025.8.29.	
	이 사	신 동 헌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2024.8.30.~2025.8.29.	
	이 사	김 성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5.3.13.~2026.3.12.	
	이 사	강 범 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5.3.13.~2026.3.12.	
	이 사	김 성	전라남도 장흥군수			2025.3.13.~2026.3.12.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023.8.30.~2025.8.29.	
	감 사	김 정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2.28.~2026.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 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	자산	27,444
	예산액	18,069	17,379	19,269		부채	1,875
	지자체 지원액	13,797	12,383	13,078		자본	25,568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063				16,309		1,820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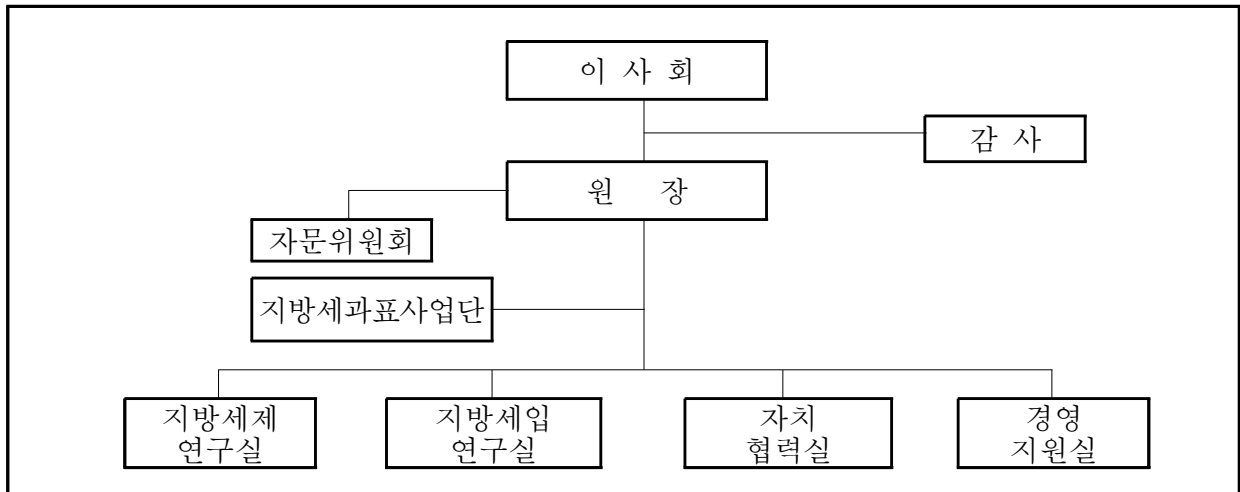
##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예산

- (설립목적)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정원 78명 / 현원 64명(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78명	1명	2명	50명	4명	21명
현 원	64명	1명	2명	34명	4명	23명
총인원	98명	정원의외 인원 34명 (파견공무원12, 위촉연구원 및 행정원 등22)				

※ 연구직(34명): 연구위원직 18명, 연구원직 8명, 조사분석직 8명

- (조 직) 4실 1사업단



- (예 산) 174.6억원(2025년 본예산)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수탁 등	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24.1 (71%)	50.5 (29%)	92.6 (53%)	64.7 (37%)	14.6 (8%)	2.7 (2%)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6) 1만분의 1

□ 2025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2,415,083	8,067,038	4,348,045	2,861,167	506,107	980,771
서울	2,926,927	2,429,864	497,063			497,063
부산	722,471	561,931	160,540		29,472	131,068
대구	465,331	353,670	111,661		29,823	81,838
인천	645,304	510,166	135,138		8,613	126,525
광주	270,831	221,230	49,601			49,601
대전	274,040	219,671	54,369			54,369
울산	274,441	186,821	87,620		47,313	40,307
세종	85,927	85,927	0			
경기	3,127,820	1,447,568	1,680,252	1,653,161	27,091	
강원	341,251	200,847	140,404	99,166	41,238	
충북	380,413	188,675	191,738	130,969	60,769	
충남	575,813	297,782	278,031	233,161	44,870	
전북	370,295	210,221	160,074	123,402	36,672	
전남	455,855	255,875	199,980	123,068	76,912	
경북	581,653	303,484	278,169	225,012	53,157	
경남	710,545	387,140	323,405	273,228	50,177	
제주	206,166	206,166	0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4,095	4,635	6,956	7,148	7,140	8,277	9,526	10,137	10,844	11,392	10,640	11,161	12,383	13,078	12,415	139,827
서울	985	1,158	1,737	1,806	1,758	1,960	2,318	2,444	2,631	2,833	2,642	2,815	3,139	3,199	2,927	34,352
부산	254	295	443	447	450	529	644	615	665	663	607	675	707	746	722	8,462
대구	150	170	255	275	286	348	387	402	427	437	410	433	466	482	465	5,393
인천	199	247	371	364	378	429	499	539	595	600	562	560	644	669	645	7,301
광주	90	100	150	159	162	214	187	226	231	250	240	249	263	292	271	3,084
대전	96	118	177	175	167	206	220	226	233	234	235	247	277	292	274	3,177
울산	106	125	187	204	192	219	240	265	269	265	239	227	241	270	274	3,323
세종	4	5	7	16	29	53	70	68	91	91	79	87	97	95	86	878
경기	1,062	1,139	1,709	1,724	1,747	2,014	2,390	2,570	2,779	3,071	2,830	2,801	3,247	3,336	3,128	35,547
강원	104	112	167	177	175	195	213	248	260	275	253	290	315	357	341	3,482
충북	112	122	183	192	191	227	256	273	285	310	306	305	348	390	380	3,880
충남	185	201	301	307	271	351	379	417	461	470	416	449	503	567	576	5,854
전북	110	125	188	195	195	220	242	255	271	275	271	324	340	370	370	3,751
전남	122	139	208	215	215	233	265	298	310	320	320	394	412	474	456	4,381
경북	188	212	318	330	340	395	460	472	495	484	455	498	534	595	582	6,358
경남	285	318	480	472	482	564	606	634	646	617	596	629	664	728	711	8,432
제주	43	50	75	90	101	120	150	184	195	197	179	177	186	216	206	2,169

## I. 2025년 사업추진 현황

### 1 연구사업

#### □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 【 2025년 중점 연구방향 】

-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지방 간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모색
- ②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 ③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 2025년도 130건 과제 수행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기획과제 20건 수행

구분	합계	기본	기획	정책·수시	기 타
2025년	130	12	8	103	7
2024년	130	14	11	90	15

#### □ 세부 추진 사업

##### ① 행정 환경·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대응 연구

- 정책이슈 선도 발굴하는 기본·기획과제(20건), 정책·제도개선 과제(103건) 수행
  - ※ 기후위기와 자동차세 주행분 개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실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등
- 국민주권정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종합적 고찰,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 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 등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 재정분권 3단계 추진방안 연구, 지방세 과세자주권 실태와 발전방안,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등

## ② 수요자 중심 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기관 만족도 강화

- 과제발굴 수요조사 확대(연1회→2회), 의뢰처 평가비중강화(40%→50%)
- 컨설팅: 세수추계·조례감면·지방재정분석·지방보조금 등 수탁용역 확대

## ③ 중장기 연구 및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편찬

- 지방세제 변화를 주제별·통시적 고찰, 제도운용을 연대별·주제별 집대성

※ 지방세 70년사, 지방재정조정제도 70년사 편찬 추진 ('26년 발간)

## ④ 과제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수행규칙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과제운영 체계 개선
- 연구수행 전(全)과정 온라인화, 연구과제DB 및 이력사항 자동 구축

## ⑤ 대외협력 및 홍보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환류 및 정책기여도 제고

- 순회간담회·학술세미나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 조성 및 성과홍보 강화

※ 릴레이 학술세미나, 아고라(Agora) 등 정책현안 학술행사 개최

- 대국민 대상 SNS 확대 및 유튜브 공모전 개최

※ 지튜브(지방세연구원 유튜브) 구독자 확대 및 미드폼·숏폼 운영, 연구원 숏폼 공모전 '지찾사'(지튜브의 주인공을 찾는 사람들) 개최

## 2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 사업 개요

○ 근 거: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 내 용: 오피스텔·건축물·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 가격 조사

※ 지방세연구원-시가표준액 조사·연구 전문기관, 25년 예산 35억 4천만원

### □ 2025년 중점 추진 사업

- 가격조사, 산정 및 검증 제도 정착을 통한 가격 신뢰도 제고
- 자치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 과표사업 국제교류 시범 추진 및 과표 네트워크 확대

□ 세부 추진 사업

① 오피스텔 과세가격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와 가격산정 일원화 등 협의 추진

② 기타물건 과표체계 개선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추진

-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기준가격 고시 체계 마련
- 지하자원(텅스텐) 기준가격 산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 마련

③ 과표사업 국제교류 추진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일본 부동산 평가기관 교류 사업 추진
- 지방세 과표 관련 학회 및 협회 지원 등 과표 네트워크 강화 등

④ 시가표준액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9건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연구 2건, 오피스텔 가격산정 체계 고도화 2건, 시가표준액 산정의 정밀성 및 형평성 강화 연구 5건 등
- ※ 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자체 제도개선 사항 연구 추진

### 3 지방세 교육 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지방세무직 총 56,718명 교육 ('14~'24)

구분	합계	201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횟수(회)	490	52	37	39	69	37	55	56	73	72
인원(명)	56,718	5,693	4,827	4,312	4,400	2,784	8,862	8,233	9,324	8,283

○ 우리구 전문교육 이수현황(집합 및 온라인)

구분	2025년 8월		2024년		2023년		2022년	
	세무과	징수과	세무과	징수과	세무과	징수과	세무과	징수과
인원수	24명	5명	16명	7명	20명	4명	16명	3명

□ 세부 추진 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맞춤형 전문교육, 상시학습용 e러닝 교육, 강의품질 제고를 위한 전임교수제
  - 2025년 재산세·취득세 등 34개 교육과정, 82회 운영, 8,790명 교육 계획
-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교육 실시 <https://edu.kilf.re.kr/>
  - ※ 2025년 개정 지방세법, 재산세 실무해설 등 12개 과정 개설 운영 中, 지속 확대 예정
- (교육 과정 개편) 전문·특별·e러닝 교육 전체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 운영
  - ※ 「중간관리자(6급)핵심리더십」·「소송실무」·「과태료실무」·「명강의특집」 4개과정  
신설 「취득세 공통·기초·심화」 과정·「찾아가는 지방세 교실」·「e러닝 과정」 확대 등
- (전임교수제 확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품질 제고
- (교육교재 발간) '25년도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 반영 7종 표준교재 발간
- (해외 지방세제도 비교 연수)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자치단체 협력 지속

**4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 ※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 자문, 고액·중요 사건의 자문회의 개최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 개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특정 쟁점 집중형으로 특화된 교육 실시
  - 주요 지방세 판례를 분석한 간행물 발간
    - ※ 대법원의 지방세 분야 주요 판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배포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건수	2,436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992건	212건
소송액(억원)	22,579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4,590	4,481

②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복수 단어 검색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 상담,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우수 자료 공유
- 지방세 전문 소식지 「지방세 알림e」 발간
  - ※ 조세심판 결정례와 행안부 유권사례 중심으로 주제 다각화, 지방세 동향 게재

③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찬회 공동 참여하여 상호 교류 확대
  - ※ 35개 단체(광역 17, 특례 5) 연찬회 지원(특강·대관료·간담회비 등)
-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50개 동아리 지원 및 자료수집비 지원(30만원)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9억원)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 Ⅲ. 2026년 사업추진 방향

#### 1 연구사업

<연구사업 개요>

비전	경영목표	전략과제
지방세·재정 최고 정책연구기관	지방세입 제도 발전 선도 연구	증장기 연구 및 정책대응 역량 강화
		지방세·재정 분야 정책이슈 선도
	출연기관 만족도 제고	현장중심 맞춤형 연구지원
		연구성과 확산 및 환류 강화

## 【 2026년 중점 연구방향 】

- 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정과제 지원 연구
- ②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 ③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 □ 2026년도 중점 연구방향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정과제 지원 연구
  - 국민주권 정부 공정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연구 수행
    -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자주재원 충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방안 모색
  - 의존재원의 불균형 개선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관련 연구 등
    - ※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대응 지방비 부담 심화(지방재정 자율성 악화) 대책,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체계개선, 지역소멸 위기 대응국민주권정부 재정 운영 방향 모색 등
-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에 관한 정책 연구
  -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입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 보유세 등 세제 완화에 따른 지방세입 영향 분석, 지역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등

## 2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 사업 개요 >

- 사업근거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 주요내용
  - (조사)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미공시공동주택, 기타물건 등 가격 산정
  - (연구) 오피스텔 가격산정 제도 개선 등 연구 수행
  - (지원)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및 업무요령 개정 지원 등

□ 2026년 추진계획

○ (조사) 시가표준액 가격 조사

(단위: 건)

구 분	2026년(목표)	2025년(목표)	2024년	2023년
합 계	262,200	261,000	263,697	228,636
오피스텔	26,000	26,000	25,257	24,286
상업용부동산	100,000	100,000	106,838	76,880
미공시 공동주택	5,200	5,000	4,200	3,674
기타물건	131,000	130,000	127,402	123,796

○ (연구) 연구과제 수행: 9건(행안부 협의 후 '26년 과제 확정)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개선 연구
- 건축물 과표체계 개선 연구 등

○ (지원) 지방자치단체 과표업무 지원 및 과표 관련 사업

-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및 적용 요령 개정 지원
- 의견청취·직권변경 가격산정 지원
-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행안부·지자체·연구원 공동 조사
- 지자체 과표업무 컨설팅
- 과표법령집, 지방세 과표연구 발간 및 배부

**3**

**자치협력사업**

<자치협력 사업 개요>

- ◆ 지방세 교육 훈련의 중추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 연구원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사업 지원
- ◆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자문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세무공무원 지방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특화·순회교육 실시
- 지방세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연구동아리 지원
- 외국 지방세 비교연수 사업 운영

-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을 본받아 세정발전 도모,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 자치단체 연찬회 및 모니터 제도 운영
  - 연구원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연구원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적용요령, 판례 등 망라한 교육교재 발간 등
- 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 지원 사업 운영
  - 지방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사업 지원
    - 제도개선 토론회, 워크숍 등 전국단위 합동회의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운영 및 관리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위한 지방세상담 창구 마련
    - 행안부 운영요령, 조심결정, 판례 등 다양한 지방세 사례 등재
  -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비용 지원 등
- 지방세 불복사건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전국단위·고액·중요 불복사건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공동대응책 마련
    - 연구원·행안부 합동회의 개최 및 쟁송 대응 논리 개발
  - 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을 위한 자문 지원
  - 불복 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지방세 불복사건 정보 공유 및 판례 분석 간행물 발간 등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